

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안

(의안번호 제83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27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8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2. 1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사유

- 하수도법 제18조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('02. 1. 14)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나. 배수설비의 설치·이설·개조·수선 또는 철거공사 시행(안 제3조)
다.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라.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마. 하수배출량의 인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및 제13조)
바.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사. 공공하수도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)
아.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2003. 1월 하수와 분뇨를 연계 처리하는 고성군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어 하수도법 제18조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 “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기준”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,

- 주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조례안 제11조 사용료, 제12·13조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주민의 하수 배출량 인정·조사 제16조 원인자 부담금 제23조 권한의 위임 사항 등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지금현재 고성군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이 도내 평균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높게 요율을 책정하면 군민의 세부담 저항이나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?
- 답 : 위의 지침은 요율 100%를 적용하도록 지시하나 우리군의 현재 요율은 80%정도 되며, 도 전체는 56%정도 됩니다. 타시군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요율이 상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12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